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0일

군포시의회의장

1. 조례명: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및 『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』이 2020년 4월 7일 공포, 2020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
-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『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』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을 “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”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

이내에” 로 하고,
나.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
다.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 을 “의원의 외부강의 등을”
로 한다.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5. 의견 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0. 5. 20. ~ 2020. 5. 25.

나. 제출방법 : 서면(또는 FAX), 우편 등

다. 기재내용

-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사무과

- 주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(금정동)
- 전화 : 031-390-8713
- FAX : 031-392-4004 (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)

붙임 1.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조례안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※ 의견 제출 시 회신을 위해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(활용 후 즉시 폐기)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의원은”을 “의원은 사례금을 받는”으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을 “의원의 외부강의 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략)	제13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의원은</u>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<u>미리</u>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<u>의원은 사례금을 받는</u> ----- ----- <u>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. 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u>	<삭 제>
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 등을</u> 제한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의원의 외부강의 등을</u> -----.
⑥ ~ ⑧ (생략)	⑤ ~ ⑦ (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